신탁계약약관

2005. 11. 09.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6. 09. 01. 개정 승인

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영상저작물(영화 및 비디오물, 매체와 관계없이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저 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(이하 "위탁자"라 한다)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저작권의 신탁)

-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,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의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별도의 서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권리를 신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자가 앞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영상저작물의 경우,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수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⑥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저작권의 신탁 기간)

- ① 신탁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단,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약 기간에 대한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 이용허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.

제4조(저작권의 관리범위)

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저작권(이하 "신탁저작권"이라 한다.)을 수탁하여 관리한다.

- 1. 공연권
- 2. 공중송신권(방송, 전송, 그 밖의 공중송신)
- 3. 복제권
- 4. 배포권

5.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

제5조(신탁저작권의 관할)

- ① 수탁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외국 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외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외국 저작권신 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을 수탁 관리 할 수 있다.

제6조(저작권의 확인 보증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권의 적법한 권리자임과 그 대상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.
-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)

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한 다.

제8조(관리수수료의 징수)

-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관리수수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.
- ②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및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, 별도규정에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9조(신탁저작권관리에 따른 경비 부담)

-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 - 1. 신탁저작권에 대한 과세
 - 2. 신탁저작권의 등록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
 - 3.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련한 분쟁에 발생한 비용
 - 4. 기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
-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10조(신탁저작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)

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(이용 허락 및 분배 유보)

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

- 1.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.형사상의 소제기 또는 수탁자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.
- 2.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분배 대상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.
- 3.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물의 귀속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.

제12조(소권)

- ① 수탁자는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신탁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/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13조 (제반 사항의 통지)에 따라 통지한다.
- ②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,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,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.

제13조(제반 사항의 통지)

-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. 만약,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.
- ② 수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금과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
 - 1. 제 14조 제①항 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.
 - 2. 위탁자로부터 신고 된 주소로 보낸 최고,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.
 - 3. 수탁자가 송금한 금액이 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.

제14조(위탁자의 신고의무)

-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.
 - 1.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경우.
 - 2. 신탁저작권 행사에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.
 - 3. 신탁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 인감을 분실한 경우.
 - 4. 위탁자의 법인명칭, 대표자, 대리인, 주소, 송금처 등이 변경된 경우.
 - 5. 기타 신탁저작권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.
- ② 위탁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 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5조(신탁 계약의 승계)

-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속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이 복수인 경우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

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탁 계약의 해지)

-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 되었을 경우.
 - 2.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.
 - 3. 위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
 - 4. 위탁자가 본 약관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 - 5.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,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.
-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 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진다.
- ④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 권리보호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신탁 계약의 종료)

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저작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 및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신탁 계약 약관의 변경 통지)

- ①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.

제19조(배상책임)

-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.

제20조(약관의 개정)

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21조(세칙의 제정)

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2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
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,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3조(재판관할)

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